

※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요령(과세특례사용)

이 신고서는 다음의 기입요령에 의하여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신고서의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.

○ 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.

○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사업자는 구분란이 로 표시된 난을 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.

사업장 명세란

사업장 명세란은 매기별 확정신고서 음식, 숙박업 또는 서비스업 중 현금수입업소를 영위하는 자가 기재합니다.

신고내용란

- ① 당해 과세기간중에 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대가와 동 금액의 2/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기재합니다.
- ② 당해 과세기간중에 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대가 중 대리·중개·주선·위탁매매 및 도급에 해당하는 금액과 동 금액의 3.5/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기재합니다.
- ③ 당해 과세기간중에 영세율 거래분으로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대가를 기재합니다.
- ④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유형변경된 경우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고납부세액을 기재합니다.
- ⑥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기재합니다.
 - 미등록가산세율(공급대가에 적용): 5/1,000
 -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율(무신고·과소신고·초과환급신고, 무납부·과소납부세액에 적용): 10/100
 -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율(공급대가에 적용): 1/100
- ⑦ 세액공제: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 및 일반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·금전등록기 계산서 이면 기재분 세액합계×10/100
- ⑧ 신용카드가맹업자와 POS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경감세액 적용대상사업자가 기재합니다.
 - 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공제세액: 1/100
 - └ POS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경감세액: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3 규정 참조
- ※ 다음의 경우는 선택하여 적용
 - POS·신용카드·공공기관매입이 중복되는 경우
 -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납부세액경 감제도가 중복되는 경우
- ⑨ 예정신고기간의 고지세액 또는 예정신고납부한 과세특례자의 예정신고서상의 납부세액을 기재합니다.

과세표준명세란

⑫~⑮: ⑤의 과세표준합계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, ⑮란의 합계금액은 ⑤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. 다만, ⑭란은 고정자산매각, 직매장공급분 등을 기재합니다.

면세수입금액란

⑯⑰ :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기재합니다.

폐업신고란

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별도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

신 고 내 용						
구 분		금 액	세 율	세 액		
과세 표준 및 납부 세액	일 반 업 종	①	$\frac{2}{100}$			
	대리·중개업 등	②	$\frac{3.5}{100}$			
	영 세 율	③	$\frac{0}{100}$			
	재 고 납 부 세 액	④				
	합 계	⑤		㉠		
가 산 세 계		⑥		㉡		
경감 · 공제 세액	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세액공제	⑦	$\frac{10}{100}$			
	POS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경감세액·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공제	⑧	2쪽 참조			
	예정신고기간 고지(납부)세액	⑨				
	합 계	⑩		㉢		
차가감 납부할 세액(환급받을세액)		⑪		㉠ + ㉡ - ㉢		
과 세 표 준 명 세						
업 태	종 목	업종코드				금 액
⑫						
⑬						
⑭ 기 타 (수입금액제외)						
⑮ 합 계						
면 세 수 입 금 액						
업 태	종 목	업종코드				금 액
⑯						
⑰						
⑱ 합 계						
폐업신고	폐업연월일	. . .	폐업사유			